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개호 · 박희승
차지호 · 이춘석 · 문금주
안호영 · 안태준 · 이정문
김병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농지 불법 소유, 불법 임대차 등 「농지법」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(리)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8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농지법」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

제6조제2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농지법」에 규정된 범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29. ~ 53. (생략)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
1. ~ 24. (생략)

25.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26. ~ 50. (생략)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「농지법」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

29. ~ 5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-

-----.

1. ~ 24. (현행과 같음)

25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「농지법」에 규정된 범죄

26. ~ 50. (현행과 같음)